

(검토보고서-참조4)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2003. 7. 9

1. 제안사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(2003.6.17)이 의결 이송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는 것이 확실시됨.
- 이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중 “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”를 “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”로 하고 “성남시디자인사업소”를 삭제 개정하는 것임.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예상되므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
- 상위법과의 상충문제,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와의 관계, 재원의 조달 및 부담, 예상되는 민원 . . . 등을 검토하였으나 큰 문제점이 없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